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종교단체 대표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및 방역 협조요청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① '21.12.6.(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② '22.2.1.(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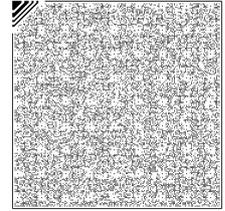
- 아 래 -

가. 조치별 적용기간

-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 ③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12.6.~12.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수도권 7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9명 이상 각각 금지

- *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1.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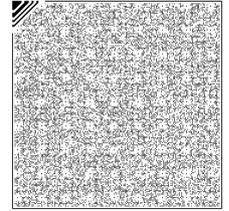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귀 단체에서는 소속 종교시설 등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 등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정에 따라 종교시설 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소모임 운영시에도 사적 모임인원 범위(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까지 가능) 안에서만 허용되며, 모임시 취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사무관 **손문희** 종무1담당관 전결 2021. 12. 3.
강성태

협조자 종무2담당관 **윤양수**

시행 종무1담당관-4210 (2021. 12. 3.) 접수

우 61485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http://mcst.go.kr>

전화번호 044-203-2317 팩스번호 044-203-3462- / smh0828@korea.kr / 대국민 공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